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3.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5호로 2023년 3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효율적인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및 문화도시 사업 참여주체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정원 확대(안 제17조)

나.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용어 정정(안 제19조)

다. 문화도시센터 기능 및 역할의 용어 정정(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2. 9.~ 2023. 3. 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 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는 문화도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 소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현행 “20명 이내의 위원”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한 것이며,
- 안 제19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문화도시 지정 이후 조성사업 추진 중인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문화도시 조성”으로 용어를 정정한 것임.
- 안 제20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는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중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거버넌스 운영”으로 정정함.

이는 여기서의 “위원회”가 문화도시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기에 용어를 정정한 것임.

○ 검토 결과

영등포구는 2021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음.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지정을 넘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화도시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도시위원회 의결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다만, 현재 우리 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인원은 타 지역의 문화도시위원회와 비교 시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인원 증원 시에는 거시적으로 지역문화 진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